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7호 2018. 9. 2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10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11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727호 삼척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 6
- 삼척시 공고 제728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삼척시 공고 제729호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22
- 삼척시 공고 제730호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33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3호 도로의 지정 공고 ----- 35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4호 도로의 지정 공고 ----- 3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110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삼척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9. 20.  
삼 척 시 장

(단위 : 천원)

회계별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 △ 감	증감률
<b>합 계</b>		<b>659,136,023</b>	<b>611,666,454</b>	<b>47,469,569</b>	<b>7.8%</b>
<b>일 반 회 계</b>		<b>612,913,790</b>	<b>567,646,128</b>	<b>45,267,662</b>	<b>8.0%</b>
<b>특 별 회 계</b>		<b>46,222,233</b>	<b>44,020,326</b>	<b>2,201,907</b>	<b>5.0%</b>
상 수 도 사 업		21,347,534	21,347,534	-	-
하 수 도 사 업		6,602,771	5,704,771	898,000	15.7%
주 택 사 업		66,460	66,460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752,846	9,777,383	△24,537	△0.3%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1,228,044	546,961	681,083	124.5%
의 료 급 여 기 금		1,243,745	1,093,883	149,862	13.7%
자 활 기 금 운 영		1,394,750	1,387,050	7,700	0.6%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1,425,630	1,425,630	-	-
주 차 장		1,032,319	542,520	489,799	90.3%
임대아파트관리운영		2,128,134	2,128,134	-	-

삼척시 고시 제2018 - 111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9. 2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51-5 외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9. 2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51-9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강원남부로 1451-5	20180921	건물번호 분할	20090807	지역적 특성 반영	
2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2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20 (오분동)	2018092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산 197-3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1길 80	20180921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4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우회로1길 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느티로1길 9-16	20180921	건물번호 분할	20090626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지형 지물활용(도계느티로분기)	
5		이	하	여	백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중전주소	계					
분할	1	간월도 삼척시 도계읍 간월남부로 1451-9	간월도 삼척시 도계읍 간월남부로 1451-5	20180921	건물번호 분할	20090807	지역적 특성반영	
	2	간월도 삼척시 오분동 2	간월도 삼척시 삼척로 4246-20 (오분동)	2018092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 기존 도로명주소	
부여	3	간월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리 산197-3	간월도 삼척시 도계읍 녹구1길 80	20180921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바식, 행정구역면시운	
	4	간월도 삼척시 도계읍 우회로1길 6	간월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노티로1길 9-16	20180921	건물번호 분할	20090626	일련번호바식, 행정구역, 지형지물 특성(도계노티로분기)	

삼척시 공고 제2018-727호

삼척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삼척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공고합니다.

2018. 9. 17.

삼척시장

1. 공청회의 개최목적

- 삼척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자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함

2. 공청회의 개최일 및 장소

- 일 시 : 2018. 10. 05.(금) 14:00
- 장 소 : 삼척시청 시민회의장(본관 1층)

3. 삼척시 연안관리지역계획 개요

- 계획명 : 삼척시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 대상 : 관내 연안
- 내용
  - 연안관리지역계획 개요
  - 연안현황 및 여건 전망 분석
  - 연안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 전략
  - 연안용도해역 및 기능구 지정
  - 자연해안관리목표 및 향후 관리방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의견이 있을시 당일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해양수산과(033-570-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8 - 728호**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삼척시장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중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의 용어순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순화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8조
  -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제1조, 제3조, 제5조
- 상위법 개정 내용 반영 및 명칭 변경
  -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명칭변경)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 신설(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척주로 296 (교동) 주민생활지원과
- 2) 전 화 : 033-570-3736
- 3) FAX : 033-570-3130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상자로”를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삼척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3조(「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의 개정)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자들”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제4호, 제7호 중의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5조(「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26조”로 한다.

제2조 중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을 “삼척시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리관, 징수관”을 “경리관·징수관”으로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출원·출납원”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의료보호기 특별 회계”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7조(「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하고, “자들”을 “사람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를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로 하고, “삼척시”를 “시”로 한다.

제5조 중 “삼척시”를 “시”로 한다.

제8조(「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②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b>자</b> 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②----- <b>사람</b> -----
제6조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u>가부동수일</u>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7조(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제7조(장학생 선발) ----- -----
1. 읍·면·동장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b>자</b>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 <b>자</b> 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1. ----- ----- <b>사람</b> ----- ----- <b>사람을</b> -----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b>자</b> 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한다.	2. ----- <b>사람을</b> ----- -----
제8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b>자가</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제8조(지급정지) ----- - <b>사람이</b> ----- ----- -----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8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③ ----- ----- ----- ----- -----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b>자</b>	1. ----- ----- <b>사람</b> -----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 -----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b>자</b>	4. ----- ----- <b>사람</b> -----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 -----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b>자</b>	7. ----- ----- <b>사람</b> -----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설치) <u>시장</u> 은 읍·면에 회관을 설치 운영한다.	제3조(설치) <u>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법</u>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같은 법</u> ----- -----
제2조(세입과 세출) 이 <u>의료급여특별회계</u> (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 <u>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u> ----- ----- ----- ----- -----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u>사회복지과장</u> ,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 ----- ----- <u>의료급여업무 담당 과장</u> , ----- -----
② <u>시장</u> 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u>삼척시장</u> 은----- ----- ----- -----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u>경리관, 징수관</u> 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u>지출원과 출납원</u>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 ----- <u>경리관·징수관</u> ----- ----- ----- <u>관</u> 에 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u>지출원·출납원</u> 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삼척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b>대불금</b>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b>대불금</b> 상환장에 기재하고 <b>대불금</b>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p>	<p>제6조(지출) ①----- ----- ----- ----- ----- ----- <b>대지급금</b> ----- <b>대지급금</b> ----- <b>대지급금</b> ----- ----- ----- ----- -----</p>
<p>부칙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 <b>의료보호기 특별 회계</b>는 이 조례에 의한 삼척시 의료급여기금 특별 회계로 본다.</p> <p>별지 제1호 서식</p> <p>별지 제2호 서식</p>	<p>부칙 ②----- ----- <b>의료</b> <b>보호기금 특별회계</b>----- ----- -----</p> <p>삭제</p> <p>삭제</p>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b>자로서</b>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b>자</b>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b>사람으로서</b>----- ----- ----- <b>사람</b>----- ----- ----- -----</p>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b>자</b> 로서 「지방자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b>자</b> 를 말한다.	1. ----- ----- ----- <b>사람</b> ----- ----- ----- ----- <b>사람</b> -----
제3조(지원대상) ①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b>시</b> 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b>삼척시</b>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5,0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 <b>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b> ----- ----- <b>시</b> ----- ----- -----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b>삼척시</b> 에 통보하면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원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대상자의 선정) ----- ----- ----- <b>시</b> ----- -----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신 설>	제20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삼척시 공고 제2018 - 729호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삼척시장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 1. 개정이유

- 자치법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의 용어순화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와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용어순화 및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5조, 제8조
  -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삭제), 제15조, 부칙 제2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삼척시장(참조: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5929) 삼척시 중앙로 296 (교동) 주민생활지원과
- 2) 전 화 : 033-570-3736
- 3) FAX : 033-570-3130

### 4. 참고사항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삼척시 규칙 제 호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혼인관계로 1인이 만 65세 미만인 가구”를 “세대원이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로 하고, 2호의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동거인 가구”를 “등록장애인 또는 만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 중 “의거대장”을 “따른 대장”으로 한다.

제2조(「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의 “자는”은 “사람은”으로, “구비 하여 읍·면·동장에게”는 “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로 한다.

제5조제2항의 “자는”은 “사람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의 “자”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자”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5조(「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및 연대보증인”을 삭제하고, 제2항 중 “및 연대보증인”을 “를”으로 하고, 제3항 중 “및 연대보증인이”를 “가”로 한다.

부칙에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하였거나 신청이 접수된 지원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②----- ----- ----- ----- -----
1. 혼인관계로 1인이 만 65세 미만인 가구	1. 세대원인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2.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 동거인 가구	2. 등록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제3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험료신청) ----- ----- ----- ----- <u>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6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대상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6조(대상자 관리) ----- ----- ----- <u>의하여~대상</u> ----- -----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로 결정된 <b>자</b> 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b>사람</b> 을 말한다.
제5조(신청) ①일반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b>자</b>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b>구비 하여 읍·면·동장에게</b> 신청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3. 신입생은 입학(예정)증명서 1부 4. <삭제 1999·07·20> ②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b>자</b> 는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①----- ----- <b>사람</b> 은----- - <b>구비하여 읍·면·동장에게</b> ----- ----- 1.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각 1부 3. 신입생은 입학(예정)증명서 1부 4. <삭제 1999·07·20> ②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b>사람</b> 은 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b>자</b> 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 ----- <b>사람</b> 에게는 ----- -----

<삼척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b>자</b> 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①----- ----- ----- <b>사람</b> 은 ----- -----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①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b>자</b> 는 참전명예수당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①-- ----- ----- <b>사람</b> 은 ----- ----- -----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조례 제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b>자</b>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 <b>사람</b> 은 ----- ----- -----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자금대여 재정보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자금대여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대보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은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p> <p>1. 신청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대보증인 1명</p> <p>2.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대보증인 2명</p> <p>② 제1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 5천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근무기관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 자활기업이 사업자금에 대한 대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액은 신청금액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p>	<p>제5조(자금대여 재정보증) &lt;삭제&gt;</p>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④ 그 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가 기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하며, 보증금액은 신청금액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담보물건은 융자신청일 현재 과세표준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p> <p>제15조(채납조치)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한다)가 상환금을 채납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독촉장을 <b>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b>에게 발부하여 그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지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b>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b>을 상대로 지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b>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b>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15조(채납조치) ①----- ----- ----- ----- <b>상환의무자에게</b> ----- ----- ② ----- ----- ----- <b>상환의무자를</b> 상대로 지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b>상환의무자가</b>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p>

<삼척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되었거나 신청이 접수된 지원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를 추가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검토사유



삼척시 공고 제2018-730호

###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21일

삼척시장



#### 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내용

읍면	도로의 종류	노선명	노선번호	도로구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개발계획		지정사유
				기점	종점			도로 너비	포장 너비	
도계	농도	곰지터선	도계 304호	도계읍 심포리 309-6	도계읍 심포리 333-4	1.8		3	3~14	농어촌도로 확포장

- 2. 설계도서 및 자금계획 : 삼척시 건설과 비치
- 3.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4. 공람장소 : 삼척시 건설과 (☎033-570-3551)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6.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 용 지 조 서

□ 사업명 : 도계읍 심포리 농어촌도로(도계304호) 정비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권입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면적	지번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도계읍 심포리	산111-4	1,886,656	임 산111-4	793	국 (산림청)					
2	도계읍 심포리	산111-8	587,228	임 산111-8	3,672	국 (산림청)					
3	도계읍 심포리	산111-10	9,223	임 산111-10	247	국 (건설부)					
계			2,483,107		4,712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8-13호

###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65-1번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17일

###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65-1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3.0m, 너비 : 0.6m, 면적 : 1.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교가리	365-1	대	109	108	1.0	한**
		이	하	여	백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8-14호

###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32-3번지 상에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20일

###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산32-3
- 도로의 현황 : 길이 : 10.60m, 너비 : 4.0m, 면적 : 21㎡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제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용화리	산32-3	임	1,055	1,034	21	이**